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5. 13 선고 2020가단6842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아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창화, 홍경원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1. 4. 29.

판 결 선 고 2021. 5. 13.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경북 청송군 C 전 318㎡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20. 1. 31.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경북 청송군 C 전 318㎡ 중 1/3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2020. 5. 13. 접수 제34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차전26639호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6. 27. “B는 원고에게 4,511,819원 및 그 중 2,223,923원에 대하여 200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내렸고, B는 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18. 8. 1.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한편 2020. 10. 21. 기준으로 B가 원고에게 연체한 위 채권원리금은 합계 8,621,207원이다.

나. D이 2020. 1. 31.경 사망하자, 망 D의 자녀인 피고와 E, B가 그 상속인이 되었는데, 위 상속인들은 유일한 상속재산인 경북 청송군 C 전 318㎡(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5.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B는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1/3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그녀의 아버지인 망 D이 사망 이전에 미리 그 자녀인 피고 등과 협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이전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 기존의 위와 같은 합의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 약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피고는 부모의 유지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일 뿐, B의 채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상회복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행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에 기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손원락